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5일, 최민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2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변안의 건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민희의원)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공지능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 체계가 미비하며, 정부 내 각 부처의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인 등 인공지능 시대의 범정부 최고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여 국가 인공지능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긴급한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근 부위원장 체계 도입 등 조직체계를 강화·개편하며, 정부 내 인공지능 정책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부처간 인공지능 기반 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연구개발 강화와 이를 통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의 도약을 국가적으로 지원·촉진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개정안은 인공지능책임관의 지정요건, 역할 및 업무 등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책임관협회의 역할과 법적 지위 등을 수범자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인공지능책임관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이라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인공지능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운영 경비까지 출연·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등 민간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 주체에게 운영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소의 설립허가 기준, 연구소장의 권한, 직원의 파견 등과 같은 내용은 통상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사항이 인공지능 기본법에 별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정도의 입법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입법경제적 측면과 기본법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